

제 호

☐ 배출가스저감장치
☐ 저공해엔진

반납확인증명서

반납 대상
자동차
또는
건설기계

소유자 성명

연락처(전화번호)

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번호

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모델명

차대번호

장치 부착(개조) 연월일

소유자 주소

반납 사유

(☐에 √표시)

☐폐차 또는 폐기 ☐수출 ☐사고·재해·도난,

☐천연가스버스 대차 ☐저공해차 대차 ☐기타 ()

반납 내용

(☐에 √표시)

반납 일시

반납 장소

반납 장치 제작사명

반납 방법

☐ 현물

☐ 금전

반납 장치명 및 부품종류:

☐ 매연여과 장치(DPF) 및 ☐ 자기진단 장치

☐ 산화촉매장치(DOC)

☐ 저공해엔진(☐ 베이퍼라이저/인젝터, ☐ 믹서/쓰로틀바디,

☐ 촉매, ☐ 엔진제어장치(ECU/ECM))
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79조의5제4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반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
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

직인